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808
----------	-----

제출년월일 : 1998. 10.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건국 50주년의 시점에 도래한 오늘의 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과 시민덕성 공동체 윤리함양에 소홀히 한 결과 직면한 체제의 총체적 위기임을 인식
-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진단과 반성,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공동체의 윤리와 덕성, 교육과 노동, 남북관계와 국제변화에 대응등 총체적 개혁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조례안 제1조)
- 위원회는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조례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조례안 제3조)
-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조례안 제11조)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1998. 10. 1.제정-대통령령제15903호)
- 지방자치단체 『제2의 건국』 추진지침

○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덧붙임

안산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이하 “시” 라한다)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시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6급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8. 10. 1 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의제·활동 및 홍보 관련사항에 대한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의 건국을 위한 관련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대표공동위원장 1인 및 공동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한 5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공동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대표공동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대통령이 지정한 직위에 재직하는 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지정한 직위에 재직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⑤위원회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대표공동위원장의 직무) ①대표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대표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대표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사회 각 분야별로 지명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7조(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 ①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부의되는 과제의 기획·심의
2. 개혁논리 및 중장기 개혁방향에 대한 기획·조정
3. 의식·제도 및 생활개혁 전반에 관한 기획
4. 국정개혁의 홍보방안 연구
5.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개발 및 제시
6. 기타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이 된다.

④기획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기획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지원과 추진 상황의 확인
4. 기타 대표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무기구에 위임하는 사항

제9조(부처추진반) 각 부처에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의 주도적 실천과 개혁의 자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반을 둔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 기획단의 기획위원, 전문위원 기타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